

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9 ~ 4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9. 11. 12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거주기간(1년 이상)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그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공훈에 걸맞는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참전유공자의 전입 시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(안 제3조).
 - 현행 : 지급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
 - 개정 :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4조, 제6조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, 제8조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(7,200천원)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 입법예고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 - 1차(당초) : 2009. 10. 15. ~ 2009. 11. 3.
 - 2차(수정) : 2009. 10. 30. ~ 2009. 11. 10.
- 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지급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”를 “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자)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<u>지급일 현재 군에</u> <u>1년 이상 주소를 둔 자</u>로 한다. 다만,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 보훈처장이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.</p>	<p>제3조(지원대상자) ----- ----- <u>지급일 현재 군에</u> <u>주소를 둔 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